

# 주주총회소집공고

2012년 3월 8일

회사명 : 듀오백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 정관영  
본점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2  
(전화) 032-816-4814  
(홈페이지) <http://www.duoback.co.kr>

작성책임자 : (직책) 부사장 (성명) 오준성  
(전화) 032-584-2662

#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5기 정기)

주주 귀하

## 제25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감사 드립니다.  
상법 263조와 향관 제22조에 의한 제25기 정기주주총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대물 -

1. 일 시 : 2012년 3월 20일(금) 오전 8시
2.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2 두모백코리아 본사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결산보고,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 제25기(2011년 1월 1일~2011년 12월 31일)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분배안서(한) 승인의 건  
    ※ 이익배당예정내용 : 1주당 현금배당 240원  
- 제2호 의안 : 경관일부 변경의 건 [주식1]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주식2]  
-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주식3]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7호 의안 : 영업 외적금 짜금규정 신설의 건 [주식4]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주권을 예탁하고 계신 실질주주께서는 의결권을 직 접행사, 대리행사 또는 불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주주총회 회의일 5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본사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5항에 의거 한국예탁결제원이 그 의결권을 대신 행사하게 됩니다.
5.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 4의 3항에 의한 경영참고사항은 당시의 본사와 국민은행증권미행 부에 배치하였고,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에 전자공시하여 조회가 가능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 주주총회 경의의 일정으로 주주대상 사용증서를 전함을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당시 홈페이지([www.duoback.co.kr](http://www.duoback.co.kr))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주총회 가명증은 없습니다.)

2012년 3월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543-2  
**듀오백코리아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 관 영** (직인생략)

20120305 주주총회소집통지서 1페이지

###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문

의결권은 주주총회에서 주주님의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는 주주님의 고유한 권리이며 수단입니다. 그러나 많은 주주님들의 주주총회에 대한 무관심과 저조한 참여율로 주주총회 개최 자체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이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질주주(증권회사 등 금융투자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보유하고 계신 분)께서 한국예탁결제원에 주주총회 회의일 5일전(2012년 3월 16일)까지, 또는 증권회사등 금융투자회사에 주주총회 회의일 7일전(2012년 3월 16일)까지 아래와 같이 의결권 행사 예부에 관한 의견표시(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를 하자 많은 부분의 주식에 대하여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총회에서 한국예탁결제원의 행사주식수를 제외한 참석주식수의 한 phần비율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Shadow Voting)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의 목적은 회사의 원활한 주총 성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주주님께서 "의사 표시통지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주총에 적절 참석하시어 주주님의 의결권을 행사함에는 전혀 제약이 따르지 않습니다.

#### - 의사표시 통지서 송부처 -

1. 우 편 : 150-884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4-6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 암)

2. 팩스번호 : 02-3774-3244~5

3. 의사표시 통지서 기재요로

동봉된 의사표시 통지서에 주주님에 직접 참석하시려면 "직접행사"에, 가족이나 제3자의代理人을 선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시려면 "대리행사"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으시려면 "불행사"에 O 표시를 하시어 우편송부하시거나 FAX로 송부하여 주시면 됩니다.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2년 3월 23일 개최하는 두오백코리아 주식회사 제25기 정기주주총회 및 속회,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실질주주 : 성명 주 소 :	(성)	년	월	일

20120305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2페이지

##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정용웅 (출석률: 40%)	염재현 (출석률: 20%)
			찬 반 여 부	
11-01	2011.01.28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용실태 보고의 건	찬성	-
11-02	2011.02.14	제24기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 및 현금배당 결정의 건	-	-
11-03	2011.02.25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개최 승인의 건	-	-
11-04	2011.03.25	제24기 정기주주총회 결과에 의한 대표이사 선임의 건	찬성	찬성
11-05	2011.11.16	지점 설치에 관한 건	-	-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해당사항 없습니다.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2	1,000 백만원	37 백만원	18.5 백만원	-

[주석] '주총승인금액'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전체 이사 보수 한도를 결정하였기에,

총 금액을 기재하였습니다 .

##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주석]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 2. 당해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당해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주석] 매출액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의 거래는 없습니다.

### III. 경영 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가. 업계의 현황

###### 1) 산업의 특성

가구산업의 의자부문은 사용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 학습, 업무환경 산업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1970년 국책사업인 주택개량 사업의 시작으로 인한 좌식문화에서 입식문화 전환으로 의자산업부문이 본격적으로 형성되었으며, 1993년 이후 생산성 향상과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야 하는 학습자 및 사무직 종사자들에 의해 의자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기능성 및 인체공학 욕구가 더욱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장의 세분화가 이루어졌으며, 점점 의자제조가 까다로운 기술집약형 품목이 되었습니다.

의자산업부문은 업체는 대형가구업계의 OEM방식 및 저가시장에서 영세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단독 브랜드 형성 및 차별화된 제품 진입은 다소 높은 초기투자비가 투입됩니다. 근래들어 건강 및 사무환경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및 인체공학적의자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고, 무엇보다 많은 시간을 의자를 사용해야 하는 사용자에게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러한 기능성, 인체공학적 의자제품의 시장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 2) 산업의 성장성

가구산업 중 의자는 건강 및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객욕구가 확산되므로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능성과 고객에 맞는 맞춤형 의자가 증가되고, 또한 업무 및 사무환경에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중요도가 다른 분야보다 부각되어 관련 기술의 발달 및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3) 경기변동의 특성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의자부문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시장의 규모가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는 가정용시장의 경우 신학기 등의 연초에 최대 성수기를 이루고 있으며, 비수기에는 일정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며 이 시기에는 고객관리 및 마케팅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무용시장의 경우는 연중 고정적인 매출이 발생하는 특성이 있으나, 경기변동에 따른 일반 기업체 등의 투자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 4) 시장의 특성

의자시장은 크게 가정용과 사무용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무용시장의 경우 그 특성상 책상, 패션, 의자를 패키지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가구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만

업무 및 사무환경에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시장의 경우도 책상과 의자를 같이 구매하는 패턴에서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경우 일반 영세기업(私製업체)들과 대형업체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대형가구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일반 영세기업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의자산업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상에 달린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의자 단일 품목특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정, 사무용 가구산업 중 의자부문에서는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의지, 업무효율 증시 등으로 건강과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5) 경쟁요소

가구산업 중 의자산업의 경쟁요소는 품질과 가격 및 A/S입니다. 당사는 의자 전문제조업체로서 주요 고객층은 일반가정, 기업체, 관공서 등이며, 각각에 맞는 영업전략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관공서 등의 경쟁업체는 퍼시스, 보루네오, 리바트, 코아스웰 등으로서, 의자부문에 국한된 경쟁을 유발하고 있고 가격 측면에서 판매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영세 소기업들이 있지만, 당사 제품의 경우 디자인 및 제품의 특성이 차별화되어 품질 및 가격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또한 건강 및 편안함을 추구하는 고객 욕구가 확산됨에 따라 이러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두개의 등받이인 뉴오백 및 유동성 작동고무는 특허등록을 통해 그 기능적 측면에 있어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선진적 A/S 시스템을 도입, 운용함으로서 고객만족 뿐 아니라 A/S관련 자료를 근거로 지속적으로 품질을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6) 관련 법령 및 규제

법적 규제로 인한 산업 진입 및 영위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나. 회사의 현황

### (1) 영업개황

당사는 1987년 설립 이후 하이팩, 교구생산을 중심으로 의자 생산의 전문성을 확보하였고, 독일 물리학자가 개발하고, 독일 그랄사가 전 세계 전용실시권을 보유한 DUOBACK 특허권에 대해 1995년 그랄사로부터 한국내 독점생산 및 판매권에 대해 국내 전용실시권을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기술이전형태의 특허권 취득이 아니라 단지 DUOBACK이론을 의자에 적용한다는 것이었으며, 이에 당사는 DUOBAC K01론을 도입, 자체적으로 한국인의 신체와 체형 맞게 설계, 생산하여 기술혁신을 이루었고, 1996년부터 본격적인 생산 및 차별화된 영업망을 형성하여 판매를 시작하였습니다.

전국28개 총판 전시장을 중심으로 1,500개의 취급점을 형성하였고, 대형할인점,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등의 다양한 유통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품질의 우수성, 차별화, 전국 사후 서비스망 관리를 통해 국내최고의 의자부문 브랜드 인지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당사 제품은 기능성을 중심으로 보다 편안함을 추구하여 그 수요에 대응하였으며, 이러한 추세는 일회성 유행이 아닌, 지속적인 수요증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적된 기술적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신제품을 출시 및 생산성 향상 및 다양한 고객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2003년 1월 선진 시스템이 확보된 본사 공장으로 이전 하였습니다.

또한,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하는 교구용 시장에 대해 2002년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으로 인정받아 본격적인 공급을 시작하여 보다 편안한 교실 환경 구축을 지향하고 있으며, 2003년 상반기 중 사무용 의자부문에 조달품목으로 지정되어 기존의 가정용 중심의 영업망을 보다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이에 본격적인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의자업체들이 시장에 나타나고 있으며, 다양한 환경에 맞는 제품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책상에 달린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의자 단일 품목특성으로 인지되고 있으며, 가정, 사무용 가구산업 중 의자부문에서는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의지, 업무효율 증시 등으로 건강과 기능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을 생각하는 시장수요에 맞추기 위함입니다.

대다수의 의자업체들은 자본력 약화로 판매 지향적이며, 또한 제품 차별화에 의한 생산공급이 아닌 유행성 제품 생산 및 판매 위주의 정책으로 경쟁력 약화와 수익 약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품 디자인 등 지적재산권 보호가 타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독창적인 제품개발을 회피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당사는 강력한 브랜드와 차별화된 기능성제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의자시장에 점유율을 더욱 높일 것입니다.

또한 당사는 듀오백 의자의 제조/판매를 하는 회사로 사업별 부문의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 (2) 시장점유율

의자 시장은 크게 가정용 및 사무용 의자를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영세한 업체가 너무 많아 전체 시장 규모를 추산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가구회사중 상장회사는 사업보고서에 의자 매출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아 비교할 수 없습니다.

## (3) 시장의 특성

의자시장은 크게 가정용과 사무용시장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사무용시장의 경우 그 특성상 책상, 패션, 의자를 패키지화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이는 대형가구업체들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왔습니다만 업무 및 사무환경에서 건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의자의 중요도를 인식하여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용 시장의 경우도 책상과 의자를 같이 구매하는 패턴에서 의자만 구매하는 형태로 변화를 하고 있으며, 이 시장의 경우 일반 영세기업(私製업체)들과 대형업체들이 양립하고 있습니다. 당사를 포함한 대형가구업체의 경우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지고 수도권 및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일반 영세기업의 경우 지방 중소도시 중심으로 영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가구산업과 마찬가지로 의자산업은 국민소득 수준에 따른 소비성향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경기 변동에 따라 전체적인 수요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책상에 달린 부속물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난 의자 단일 품목특성에 대한 많은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가정, 사무용 가구산업 중 의자부문에서는 자녀의 학습환경 개선의지, 업무효율 증시 등으로 건강과 기능성을 부가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이러한 수요에 맞춘 다양한 제품들이 시장에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분야 : 인간공학 가방 사업

-내용 : 듀오백 의자와 같이 척추 건강에 좋은 인간공학 학생용 가방을 연구하였으며,

인간공학적인 면에서는 기존 사업인 '듀오백 의자'와 같은 맥락입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통해 듀오백 가방을 공동개발하고 있으며, 듀오백 기술력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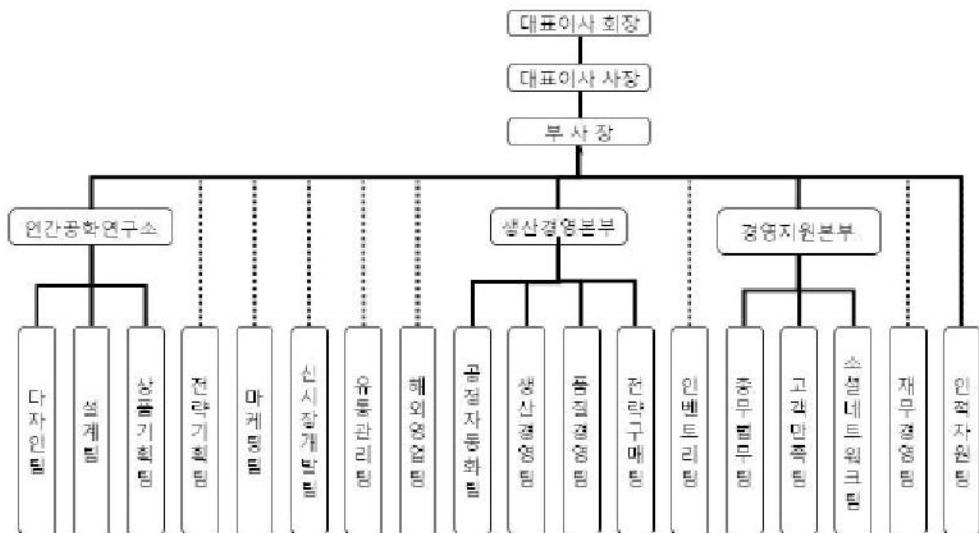
-재원 : 내부 유보자금으로 연구개발하였으며,

외부 생산업체를 통해 제품 생산을 하기에 설비투자는 없습니다.

-전망 : 일반적인 가방 시장은 존재하나, 인간공학 기능성 가방은 전무한 상태이며,

향후 시장 확대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고 판단합니다.

## (5) 조직도



조직도

##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 재무제표의 승인

####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 성장성

매출액은 2008년을 시작으로 안정적인 상승세에 있으며, 2010년대비 약 2.7% 성장으로 매출액 400억원을 초과 달성을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1사분기는 '신학기 시즌'으로 전체 매출액에서 약 3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4분기는 상대적으로 비수기이나 특판(OA 시장)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2010년에 이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 기준으로 보면, 특판(OA시장), 온라인 시장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이 소비 패턴의 변화로 위축되는 모습이나 직영점 설치 및 오프라인 유통혁신 작업으로 개선될 것으로 봅니다.

##### - 수익성

매출액 대비 당기순이익률이 7.4%로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매년 1~2개 모델의 신제품이 출시되고 있으며, 신제품의 매출 비중이 증가하면서 특판, 온라인 시장 매출도 상승하기에 안정적인 성장 및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재무제표 (K-IFRS)]**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자산		
I. 유동자산	30,513,790,022	34,262,098,748
(1) 당좌자산	27,586,173,342	31,962,358,188
(2) 재고자산	2,927,616,680	2,299,740,560
II. 비유동자산	22,637,521,856	17,452,899,346
(1) 투자자산	10,599,921,504	6,136,449,473
(2) 유형자산	9,230,909,254	9,005,075,971
(3) 무형자산	2,314,120,575	2,042,677,902
(4) 기타비유동자산	492,570,523	268,696,000
자산총계	53,151,311,878	51,714,998,094
부채		
I. 유동부채	4,382,001,547	3,643,764,923
II. 비유동부채	270,000,000	260,163,493
부채총계	4,652,001,547	3,903,928,416
자본		
I. 자본금	5,984,020,000	5,984,020,000
II. 자본잉여금	9,387,320,000	9,387,320,000
III. 자본조정	(3,810,895,863)	(3,810,895,863)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05,950,192)	199,452,166
V. 이익잉여금	37,544,816,386	36,051,173,375
자본총계	48,499,310,331	47,811,069,678
부채와자본총계	53,151,311,878	51,714,998,094

[주석]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감사결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5 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I. 매출액	40,860,122,284	39,775,788,209
II. 매출원가	28,189,163,538	26,826,772,307
III. 매출총이익	12,670,958,746	12,949,015,902
IV. 판매비와관리비	10,709,905,500	10,674,746,440
V. 영업이익	1,961,053,246	2,274,269,462
VI. 영업외수익	1,899,413,714	1,855,616,953
VII. 영업외비용	209,736,526	190,943,291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익	3,650,730,434	3,938,943,124
IX. 법인세비용	801,816,268	815,071,687
X. 당기순이익	2,848,914,166	3,123,871,437
XI. 기타포괄이익	(805,402,358)	199,452,167
XII. 총포괄이익	2,043,511,808	3,323,323,604
XIII. 주당순익	515	560

[주석]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감사결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5 기 (2011년 1월 1일 부터 2011년 12월 31일 까지)

제 24 기 (2010년 1월 1일 부터 2010년 12월 31일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I. 처분전 이익잉여금	35,995,820,775	34,637,448,880
1. 전기이월 이익잉여금	33,146,906,609	31,513,577,443
2. 당기순이익	2,848,914,166	3,123,871,437
II. 임의적립금등의 이입액	0	0
1.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0	0
합계	35,995,820,775	34,637,448,880
III. 이익잉여금 처분액	1,460,373,816	1,490,798,271
1. 이익준비금	132,761,256	135,527,116
2. 배당금	1,327,612,560	1,355,271,155
가. 현금배당 (주당 배당금(율)) 당기 : 240원 (24.0%) 전기 : 245원 (24.5%)	1,327,612,560	1,355,271,155
IV.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34,535,446,959	33,146,650,609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25기	제24기
주당 배당금	보통주	240원	245원
	우선주	-	-
시가배당률(%)	보통주	6.3%	5.8%
	우선주	-	-
배당금 총액 (백만원)		1,328	1,355

**[연결재무제표 (K-IFRS)]**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대 차 대 조 표(재 무 상 태 표)>**

제 25 기 2011년 12월 31일 현재

제 24 기 2010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자 산		
I. 유동자산	31,887,529,549	35,429,735,501
(1) 당좌자산	28,941,226,979	33,129,994,941
(2) 재고자산	2,946,302,570	2,299,740,560
II. 비유동자산	24,089,841,051	19,521,136,182
(1) 투자자산	6,800,225,928	3,802,687,358
(2) 유형자산	12,382,532,599	12,104,312,214
(3) 무형자산	3,924,127,778	3,073,157,216
(4) 기타비유동자산	982,954,746	540,979,393
자산총계	55,977,370,600	54,950,871,683
부 채		
I. 유동부채	5,295,272,546	4,204,223,757
II. 비유동부채	2,320,836,500	2,365,980,799
부채총계	7,616,109,046	6,570,204,556
자 본		
I. 자본금	5,984,020,000	5,984,020,000
II. 자본잉여금	9,387,320,000	9,387,320,000
III. 자본조정	(3,810,895,863)	(3,810,895,863)
IV. 기타포괄손익누계액	(705,011,403)	141,844,949
V. 이익잉여금	36,790,347,868	35,700,175,027
VI. 비지배지분	715,480,952	978,203,014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자본총계	48,361,261,554	48,380,667,127
부채 및 자본 총계	55,977,370,600	54,950,871,683

[주석]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감사결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제 25 기 (2011.01.01 부터 2011.12.31 까지)

제 24 기 (2010.01.01 부터 2010.12.31 까지)

(단위 : 원 )

과 목	제 25 기	제 24 기
I. 매출액	43,295,809,386	40,685,217,065
II. 매출원가	28,188,361,784	26,820,683,075
III. 매출총이익	15,107,447,602	13,864,533,990
IV. 판매비와관리비	13,976,750,120	11,763,457,602
V. 영업이익	1,130,697,482	2,101,076,388
VI. 영업외수익	2,040,764,022	1,954,933,283
VII. 영업외비용	322,511,737	294,369,376
VII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2,848,949,767	3,761,640,295
IX. 법인세비용	666,142,581	818,079,777
X. 당기순이익	2,182,807,186	2,943,560,518
XI. 기타포괄손익	(846,856,352)	176,755,467
XII. 총포괄이익	1,335,950,834	3,120,315,985
XIII.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2,182,807,186	2,943,560,518
XIV. 총포괄손익의 귀속	1,335,950,834	3,120,315,986

[주석] 외부 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이전에 작성된 자료이므로, 감사결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정관의 변경

###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해당 사항 없습니다.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9조(주식의 종류, 수 및 내용) (1)회사는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2)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우선주식의 발행한도는 이백만주로 한다.  (3)우선주식에 대한 최저배당률은 연 액면금액의 1%로 한다. (4)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우선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우선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우선주식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은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 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우선주식의 주주는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우선주식의 주주는 우선주식에 대하여 소정의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 시까지는 의결권이 있다. (7)우선주식은 발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다만, 위 기간 중 소정의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배당이 원료될 때까지 그 기간은 연장된다. (8)제7항의 규정에 의해 발행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주식의 종류) (1)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으로 한다. (2)회사가 발행하는 종류주식은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우선주식, 의결권 배제 또는 제한에 관한 주식, 상환주식, 전환주식 및 이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혼합한 주식으로 한다.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종류주식 발행가능 하도록 정관변경 <상법 제344조 제1항>
<신설>	제9조의2(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1)회사는 이익배당, 의결권 배제 및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이하 이 조에서는 “종류주식”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2)제5조의 발행예정주식총수 중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삼백만주로 한다. (3)종류주식에 대하여는 우선배당한다. 종류주식에 대한 우선배당은 1주의 금액을 기준으로 연 5% 이상 40% 이내에서 발행시에 이사회가 정한 배당률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4)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고 보통주식에 대하여 종류주식의 배당률과 동률의 배당을 한 후, 잔여배당 가능이익이 있으면 보통주식과 종류주식에 대하여 동등한 비율로 배당한다. (5)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못한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미배당분을 누적하여 다음 사업연도의 배당시에 우선하여 배당한다. (6)종류주식의 주주에게는 종류주식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배당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다음 총회부터 그 우선적 배당을 한다는 결의가 있는 총회의 종료시까지는	종류주식 발행가능 하도록 근거규정 마련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p>의결권이 있다.</p> <p>(7)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종류주식을 상환할 수 있다.</p> <p>(8) 상환가액은 발행가액에 발행가액의 10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을 더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상환가액을 조정하려는 경우 이사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 조정사유, 조정방법 등을 정하여야 한다.</p> <p>(9) 상환기간은 종류주식의 발행 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범위 내에서 발행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p> <p>(10) 회사는 주식의 취득의 대가로 현금이외의 유가증권이나(다른 종류의 주식은 제외한다) 그 밖의 자산을 교부할 수 있다.</p>	
제13조(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주주에게 배당할 이익의 범위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의하여야 한다. 1. 소각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2. 소각하기 위하여 취득할 주식기액의 총액 3.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기간: 이 경우 그 기간은 이사회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일 이전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2 제2항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할 것. 이 경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 법률 제165조의2 제2항 1호의 방법에 의한 때에는 그 취득기간과 방법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소각을 위하여 취득할 금액이 당해 사업년도말 상법 제4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는 한도 이내 이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소각한 때에는 그 소각의 결의 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주주총회에 제2항 각호의 사항과 주식을 소각한 뜻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만으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도록 개정 <상법 제343조 제1항>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④(생략) ⑤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제17조(전환사채의 발행) ①~④(현행과 동일) <스케>	표준정관에 의거 변경
<신설>	제18조의2(사채 발행의 위임)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금액 및 종류를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표준정관에 의거 변경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9조(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조문 오류 수정
<신설>	제37조의2(이사의 책임감경)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을 이사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 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면제한다. 다만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상법 제397조,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준정관에 의거 변경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생략)	제39조(이사회의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법령과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현행과 동일)	상법 개정으로 인한 변경
제47조(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③(생략) ④ 감사에 대하여는 정관 제36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감사의 직무 등) ①~③(현행과 동일) ④ 감사에 대하여는 정관 제36조 제3항 및 제37조의 2의 규정을 준용한다.	표준정관에 의거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신설>	<p>⑤감사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p> <p>⑥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을 이사(소집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집권자)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p> <p>⑦제6항의 청구를 하였는데도 이사가 자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p>	
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②~④(생략) ⑤대표이사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영업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대표이사는 제5항이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 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p>제51조(재무제표 등의 작성 등)            ①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 및 제447조의2의 각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p> <p>②~④(현행과 동일)            ⑤대표이사는 상법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하며, 제447조의 서류를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고,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상법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⑦제6항에 따라 승인받은 서류의 내용은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대표이사는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때에는 자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54조(이익배당) ①~③(생략) <신설>	<p>제54조(이익배당)            ①~③(현행과 동일)            ④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51조제6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다.</p>	상법 개정에 따른 변경
제54조의2(중간배당) ① 회사는 7월 1일 0시 현재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사업년도개시일 이후 제1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p>제54조의2(분기배당)            ①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의 말일(이하 “분기배당 기준일”이라 한다)의 주주에게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5조의12에 따라 분기배당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이사회결의는 분기배당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직전결산기까지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 목적을 위해 적립한 임의준비금            5.상법 시행령 제18조에서 정한 미실현이익            6.분기배당에 따라 당기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④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분기배당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분기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분기배당 기준일 후에 발행된 신주에 대하여는 최근 분기배당 기준일 직후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제9조의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p>	중간배당 규정을 분기배당으로 전면 개정
	부칙 이 정관은 2012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 제13조, 제18조의2, 제37조의2, 제39조, 제47조, 제51조, 제5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4조 및 제54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 한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이사의 선임

####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사외이사후보자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오준성	1965.01.19	사내이사	회사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오준성	듀오백코리아(주) 부사장	듀오백코리아(주) 이사	해당사항 없음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감사의 선임

####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 가. 후보자의 성명 · 생년월일 · 추천인 · 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환호	1963.03.31	해당사항 없음	이사회
총 ( 1 ) 명			

####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 · 약력 ·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현재)	약력	당해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이환호	미국LA 유통회사 EW Mart 이사	코오롱 상사 재무팀 금융그룹장	해당사항 없음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지 아니한 경우>

선임 예정 감사의 수	0(명)
-------------	------

감사 후보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가. 이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이사의 수(사외이사수)	5 ( 2 )	5 ( 2 )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0억원	13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감사의 보수 한도 승인

##### 가. 감사의 수 · 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구 분	전 기	당 기
감사의 수	1	1
보수총액 내지 최고한도액	1억원	1억원

#### ※ 기타 참고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 □ 기타 주주총회의 목적사항

가. 의안 제목 :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 신설의 건

나. 의안의 요지

- ① 지급 대상 :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임원으로써 1년 이상 상근 근속한 임원 중 실제로 퇴임하는 자
- ② 임원 퇴직금 지급 조건 : 임원 퇴임 시 담당 업무의 인수인계가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이사회 확인 후 지급. 단, 연임, 승진, 이사, 감사의 변경 등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
- ③ 지급제한 : 임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주총회에서 해임 결의 또는 법원의 해임 판결에 의하여 퇴임하는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 ④ 퇴직금 계산 산식

퇴직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동안 지급받은      X 1/10 X 근속년수 X 퇴직금 지급률

총급여의 연 평균 환산액

※ 세법에서 정한 산식에 따라 계산